

기업지배구조 헌장



[목 차]

전문	1
1. 주주	
1) 주주의 권리	2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2
3) 주주의 책임	3
2. 이사회.....	3
1) 이사회 기능	3
2)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3
3) 독립이사.....	4
4) 이사회 운영	5
5) 이사회 내 위원회	5
6) 이사의 의무 및 책임.....	5
7) 평가 및 보상	6
3. 감사기구	6
1) 감사위원회.....	6
2) 외부감사인	7
4. 이해관계자	7
5.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8
1) 공시.....	8
2) 기업 경영권 시장	8

2021. 11. 25. 제정
2025. 3. 27. 개정(2025. 3. 28. 시행)
2026. 3. 25. 개정(2026. 7. 23. 시행)

【 전문 】

SK스퀘어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회사는 고객, 구성원, 주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회사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해 나가며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회사의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경영의 일반 원칙으로 삼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1. 주주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며, 모든 주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1.1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회사의 이익분배에 참여할 권리,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상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 ② 합병, 분할, 정관의 변경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사항들은 주주총회 등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1.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대우한다.
- 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한다.
- ③ 회사는 위법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그 거래내역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한다.

1.3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배주주는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2. 이사회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경영진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 회사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과 정관에 따라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1 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이 정하는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 ②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또는 산하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장기 기업가치 관점에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2.2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 ① 이사회는 효과적인 토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로 구성하되,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영감독이 가능하도록 독립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6. 3. 25.>

- ② 이사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인사로 선임한다.
- ③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사로 선임하지 않는다.
- ④ 회사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채택한다.

2.3 독립이사

- ① 독립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경영진을 감독·지원하기 위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6. 3. 25.>
- ② 독립이사는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3. 25.>
- ③ 회사는 독립이사 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6. 3. 25.>
- ④ 회사는 이사회 개최 전 독립이사 사전보고회를 통해 이사회에 상정될 의안에 대해 보고하는 등 독립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5.>
- ⑤ 독립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3. 25.>

2.4 이사회 운영

- ①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은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 ② 이사회는 의사진행에 관하여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2.5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인사보상위원회, ESG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 3. 27.> <개정 2026. 3. 25.>
- ② 이사회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감사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6. 3. 25.>
- ③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정관상 위원회로 한정)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모든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명문화된 규정에 따른다.

2.6 이사의 의무 및 책임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이 되는 최선의 결과를 추구한다.
- ② 이사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 이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당한 정보를 기초로 충분히 검토하여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⑤ 회사는 유능한 인사를 유치하고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7 평가 및 보상

- ①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며 평가결과는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한다.
- ②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③ 회사는 법령에 따라 주요 경영진의 보수 및 보수 지급 기준 등을 공시한다.

3. 감사기구

감사기구는 경영진,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사업무는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3.1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를 1인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26. 3. 25.>
- ②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등 법령과 정관이 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2 외부감사인

-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 ②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 ④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4. 이해관계자

- ① 회사는 고객과 구성원,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노력한다.
- ③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④ 회사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5.1 공시

- ① 회사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 정기공시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 ② 회사는 공시 정보이용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동시에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 ③ 회사는 미래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황에 대한 예측정보를 적절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5.2 기업 경영권 시장

- ① 기업의 인수, 합병, 분할,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권 방어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

- ③ 회사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 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가액에 의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